

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4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4. 10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“도시계획법”이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대체 제정되고, “토지수용법” 및 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”이 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”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변경 전 법령을 변경된 법령으로 수정

1) 도시계획법 →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(안 제2조)

2) 토지수용법 →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(안 제2조)

3)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→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
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- 2)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

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생략
- 2)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하고, “토지수용법”을 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제4조중 “다음 각호1의”를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중 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”을 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철거”라 함은 도시계획법 규정의 도시계획사업, 토지수용법 규정의 공익사업,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.</p> <p>제4조(적용배제)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중 <u>다음 각호1의</u>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~3. (생 략)</p> <p>제6조(보상금액 결정기준)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과 감정평가에관한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. 다만, 감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-----, 공익사업에관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-----</p> <p>제4조(적용배제) -----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보상금액 결정기준) ----- 공익사업에관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</p>